

#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9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혜영,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심미경,  
유만희, 이상욱, 이원형,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3  
명)

## 1. 주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을 도모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키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함.

## 2. 제안이유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인력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는 급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공통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속 지역을 분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대한민국 국회와 관계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 불법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불법 주정차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며,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75만 5,346건으로 전년 (109만 1,366건) 대비 160.8% 증가할 정도로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 및 단속인력 확충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치와 인력을 중복으로 사용되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의 효율적 운영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면 단속인력 확충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 (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범칙금 납부 전까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여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칙금 납부 이후 위반 차주의 기기 반납을 통해 단속업무를 줄이는 효율적인 단속 방법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둘,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하고, 경찰청 담당 구역 내 범칙금 부가세를 인상하며 필요시 차량 이동 제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024. 8.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